



#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기재사항 변경 등 단순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규제 완화에 대한 국토교통부 답변자료 송부

1.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3222('20.12.3.)호 및 대한건축사협회 법제230-2030('20.12.9.)호 관련입니다.
2. 기재사항 변경 등 단순 용도변경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 관련 민원에 대한 국토교통부 회신 내용으로 붙임을 참고하여 건축 업무 시 해당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1) 대한건축사협회 질의

- 가.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이 5% 미만일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이 필요한지
- 나. 건축구조설계하중(KDS 41 10 05) 기본등분포활하중 변경이 5% 미만일 경우 구조내력을 5% 미만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지

2) 국토교통부 답변

- 가. 건축구조내진설계기준(KDS 41 17 00)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라 달라지는 구조내력 변경이 5%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 구조안전확인서 제출대상 아님
- 나. 건축구조설계하중(KDS 41 10 05)에 따라 등분포활하중의 변경이 5% 미만일 경우, 구조내력 변경 5% 미만인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붙임 1. 관련공문 2부.  
2. 국토교통부 답변자료 1부.  
3. 등분포활하중 관련 기준 자료 1부. 끝.

##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창원시장(건축경관과장), 진주시장(건축과장), 통영시장(건축과장), 사천시장(건축과장), 김해시장(건축과장), 밀양시장(건축과장), 거제시장(건축과장), 양산시장(건축과장), 의령군수(도시재생과장), 함안군수(도시건축과장), 창녕군수(도시건축과장), 고성군수(건축개발과장), 남해군수(도시건축과장), 하동군수(도시건축과장), 산청군수(도시교통과장), 함양군수(민원봉사과장),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합천군수(도시건축과장), 하동 사무소장(민원행정팀장),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건축과장)

주무관 정서빈 건축관리담당 차종열 건축주택과장 전결 2020. 12. 11. 최진희

협조자

시행 건축주택과-23542 (2020. 12. 11.) 접수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 경남도청 신관4층 건축 주택과(사림동) / <http://gyeongnam.go.kr>

전화번호 055-211-4325 팩스번호 055-254-1119 / [wr5262@korea.kr](mailto:wr5262@korea.kr) / 비공개(6)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온라인으로 문서제출 "문서24"